

문서번호	마케팅1본부2022-371	시행일자	2022.12.29
수신	하단 리스트 참조	참조	
제목	투자신탁 명칭 변경 및 모투자신탁 명칭변경 등의 건		

1. 귀 사(행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 
 2. 귀 사(행)에서 판매하고 당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관련문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
1. 대상 펀드 : 미래에셋인디펜던스한아름증권투자회사(재권통합) 등 16건

2. 변경사항 :

- 1) 투자신탁 명칭 변경
- 2)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
- 3) 모투자신탁 삭제
- 4) 운용역 변경
- 5) 환매수수료 삭제
- 6) 가입자격 변경
- 7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8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- 9) 법 개정사항 반영
- 10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11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3. 효력발생예정일 : 2022년 12월 29일 (목)

※ 수신처 : DB금융투자, IBK기업은행, SK증권, 광주은행, 교보생명, 교보증권, 대신증권, 수협은행, 신영증권, 아이비케이투자증권, 우리은행, 유안타증권, 전북은행, 하나은행, 하나증권,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, 한국씨티은행, 한국투자증권, 현대해상화재, 홍콩상하이은행, BNK투자증권, DGB대구은행, KB국민은행, KB증권, NH농협은행, NH투자증권, 경남은행, 부산은행, 삼성생명, 삼성증권, 삼성화재해상보험, 신한은행, 신한투자증권, KB손해보험, 제주은행, 케이디비생명, 하이투자증권, 한국산업은행, 한화생명, 한화투자증권, 현대차증권, NH선물, 다올투자증권, 리딩투자증권, 메리츠증권, 미래에셋생명, 미래에셋증권, 부국증권, 상상인증권, 우정사업본부, 유진투자증권, 유화증권, 이베스트투자증권, 카카오페이증권, 케이프투자증권, 키움증권, 한국프스증권, 한양증권, 흥국증권

※ 본 건은 자본시장법 제 89조(수시공시) 제 1항에 근거한 수시공시 사항이며, 동 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함. (인터넷 홈페이지 공시/전자우편 이용/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 게시)

※ 참고 : 판매회사별 펀드리스트는 기준 시점의 판매잔고 유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.

※ 첨부 : 변경 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 1부.

끝.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  
대표이사 이병성

